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이정문·강준현·홍기원

박 정ㆍ이연희ㆍ이훈기

문금주 • 이학영 • 복기왕

문진석 · 서영석 · 김원이

이재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정작 당사자가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 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다음 각 호"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과 주소
-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4. 의견제출기한
- 5. 청문일자 및 인정 취소 예정일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제14조의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① (생 략) 인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 다<u>음 각 호</u>-----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신 설> 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 설> 제2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취소하려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명칭과 주소 2. 인정을 취소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3.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하는 방법
	4. 의견제출기한
	5. 청문일자 및 인정 취소 예정
	<u>일</u>
	<u>6.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